

정책연구 2017-26

주민협약체를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리대상 확대방안 연구

안 용 준 · 지 남 석

연구책임	• 안용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지남석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 유화평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석사재학

정책연구 2017-26

**주민협의체를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리대상 확대방안 연구**

발행인 박재욱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신세기사 TEL 042-488-6577 FAX 042-488-657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방법 및 내용	5
1. 연구의 방법	5
2. 주요 논의사항	6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6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시설 현황	9
제1절 주차시설 현황	9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현황	9
2. 공영주차장 현황	10
3. 민영주차장 현황	12
4. 주차장 확보율 현황	14
제2절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 현황	15
1. 주차시설 공급현황	15
2. 주차수요현황	17
3. 주차수급 현황	20
제3절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현황	22
1. 조치원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22
2.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25
제3장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34
제1절 관련계획 검토	34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5)	34
2.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검토	37
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관련 조례 검토	43

제4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례조사	48
제1절 타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8
제2절 주민협의회 관리목적 분류	52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52
2. 비영리단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영주차장관리	53
제3절 지자체 조례 개정 사례 조사	54
1. 경상북도 문경시 사례	54
2. 대구광역시 서구 사례	58
제4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주민자율조직, 비영리단체) 현황	60
제5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논의	64
제1절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64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64
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65
제2절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67
제3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71
1.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71
2.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72
제6장 결 론	7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75
제2절 정책 제언	77
부록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주민협의회 또는 비영리단체 관련)	83
참고문헌	110

표 차례

[표 2-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현황	9
[표 2-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현황	10
[표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현황	12
[표 2-4]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착공현황	13
[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확보율 현황	14
[표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민영 주차시설 공급현황	15
[표 2-7] 세종특별자치시 유료/무료 주차시설 공급현황	16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17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주간 주차수요현황	18
[표 2-10]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야간 주차수요 현황	19
[표 2-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현황	20
[표 2-12] 조치원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22
[표 2-13]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사대상	25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ITS 종합계획 통합주차정보시스템	36
[표 3-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요금	44
[표 4-1] 지자체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조례	48
[표 4-2] 경상북도 문경시 주차장 조례 개정내용	54
[표 4-3] 문경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56
[표 4-4]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56
[표 4-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내용	58
[표 4-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현황	60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초안	71
[표 5-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초안	72

그림 차례

[그림 2-1] 조치원 공영주차장 위치	24
[그림 2-2] 조치원 침산리지역 공영주차장 위치도	25
[그림 2-3] 조치원 침산리 공영1주차장 현장	26
[그림 2-4] 조치원 침산리 공영2주차장 현장	27
[그림 2-5] 조치원 침산리 공영3주차장 현장	27
[그림 2-6] 조치원 침산리 공영4주차장 현장	28
[그림 2-6] 조치원 번암리 공영주차장 위치도	28
[그림 2-6] 조치원 번암리 공영주차장 현장	29
[그림 2-7] 조치원 신흥리 공영주차장 위치도	29
[그림 2-6] 조치원 번암리 공영주차장 현장	30
[그림 6-1]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식 변화	78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방법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 조치원읍, 기타읍면의 구도심지역 주택 및 상가지역 등은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읍면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무료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운영관리 미흡으로 청소불량 및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활성화 저해, 주변도로 불법주차차량 증가로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비상상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 운영.
- 향후 읍면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민간위탁 추진시 민간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함.
- 따라서, 위탁관리 대상을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생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과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도 관리위탁대상에 포함 시행. (제주시, 서귀포시 시행중)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은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 운영가능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 읍면지역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대상을 주민협의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임.
- 이를 위해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마련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
- 제도적 해결방법 및 필요한 관련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하기 위함.

제2절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세종시 주차장 현황조사
 - 주차수급실태 분석
 - 읍면지역 주차장 보급현황 분석
- 세종시 읍면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현황조사 및 문제점 진단
 - 세종시 읍면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현황조사
 - 운영관리 실태 현장조사
- 주민협의를체를 활용한 타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례조사
 - 주민협의체, 비영리단체 등이 민간위탁관리 가능한 지자체 조사
 - 실제 주민협의체 및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조사
-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안 반영

주요내용	소요기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연구계획 및 착수						착수 및 세종시 협의
현황분석 및 조사						현장조사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관련제도 개선방안 도출						자문회의
보고서 정리						보고서 작성

2. 주요 논의사항

- 세종시 소규모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문제점 진단.
- 주민협의체를 통한 타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례조사 및 효과.
-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제안.
- 효과적 개선방안 집행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관련정책 제안.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세종시 읍면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체계 기반.
- 이용 주체인 주민 스스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참여기회 제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소규모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정책 근거자료 활용.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시설 현황

1. 주차시설 현황
2.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 현황
3.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현황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시설 현황

제1절 주차시설 현황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면수는 노상 312면, 노외 1,523면(이상 2017년 기준), 건축물부설 89,504면(2014년 기준)으로 총 주차면수는 91,339면으로 조사됨.

[표 2-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현황

구분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세종시	91,339	312	1523	89,504
한솔동	9,869	44	137	9,688
아름동	13,072	-	54	13,018
도담동	18,716	13	-	18,703
어진동	211	-	211	미확인
나성동	136	44	92	미확인
조치원읍	21,159	201	872	20,086
소정면	513	-	-	513
전의면	4,422	-	65	4,357
전동면	1,116	-	-	1,116
연서면	3,079	-	-	3,079
연기면	4,087	-	-	4,087
연동면	2,152	10	-	2,142
부강면	5,563	-	51	5,512
장군면	3,985	-	-	3,985
금남면	3,259	-	41	3,218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자료에 세종시 교통과 내부자료(노상, 노외 주차장) 추가수정

2. 공영주차장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36개소(89,466㎡)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면수는 1,102면으로 조사됨.
-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현황

구분	주소	주차면적 (㎡)	주차면	주차형태		징수방법	
				노상	노외	유료	무료
합계	36개소	89,466	1102	9	27	6	30
나성동1	세종시 노을1로 16(부근) (나성동 724번지)	-	44	○		○	
도담동1	세종시 보듬3로 8-20(부근) (도담동 258-15, 245-4번지)	-	13	○		○	
신안리1	조치원을 봉산길(부근) (신안리 541번지)	1,515	49		○		○
교리1	조치원을 문화로 17(부근) (교리 27-1번지)	25,123	34	○			○
교리2	조치원을 새내로 165(부근) (교리 140-1번지)	99	21	○			○
번암리1	조치원을 번암안동네길 20(부근) (번암리 209-14번지)	424	13		○		○
신흥리1	조치원을 군청로 87-16 (신흥리 123번지)	18,332	78	○			○
신흥리2	조치원을 신흥샛터길 37 (신흥리 8-10번지)	212	28		○		○
죽림리1	조치원을 도장말길 52(부근) (죽림리 160-7번지)	301	15	○			○
죽림리2	조치원을 새동네뒷골길 7-1 (죽림리 359-4번지)	84	9		○		○
죽림리3	조치원을 죽림본로 9(부근) (죽림리 212-2번지)	793	29		○		○
남리1	조치원을 조치원4길 144-15 (남리 433번지)	1,599	45		○		○
원리1	조치원을 으뜸길 122(맞은편) (원리 154-9번지)	332	36	○			○

원리2	조치원을 새내로 99 (원리 12-11번지)	2,338	200		o	o
원리3	조치원을 으뜸길 215 (원리 141-54번지)	15,007	72		o	o
명리1	조치원을 새내8길 115 (명리 24-1번지)	13,545	17	o		o
정리1	조치원을 조치원6길 38 (정리 33-3번지)	1,014	71		o	o
침산리1	조치원을 행복5길 29(부근) (침산리 254-8-9번지)	359	21		o	o
침산리2	조치원을 행복 5길 29(맞은편) (침산리 253-5번지)	322	10		o	o
침산리3	조치원을 행복11길 12(맞은편) (침산리 264-6번지)	430	22		o	o
침산리4	조치원을 행복12길 5-6(맞은편) (침산리 261-5번지)	200	15		o	o
침산리5	조치원을 행복1길 13(부근) (침산리 272-9번지)	187	6		o	o
침산리6	조치원을 문화7길 13(부근) (침산리 277-13번지)	430	10		o	o
침산리7	조치원을 행복 5길 8-1(부근) (침산리 266-11번지)	270	16		o	o
침산리8	조치원을 행복 5길 31-3(부근) (침산리 254-3번지)	224	12		o	o
침산리9	조치원을 행복 5길 18(부근) (침산리 251-13번지)	219	12		o	o
침산리10	조치원을 행복 12길(부근) (침산리 260-7번지)	180	8		o	o
침산리11	조치원을 행복 7길(부근) (침산리 270-6번지)	345	17		o	o
서창리1	조치원을 돌마루5길 27 (서창리 289-2번지)	430	12		o	o
부강면1	부강면 부강5길 19(부근) (부강리 464-21번지)	72.2	7		o	o
부강면2	부강면 부강5길 18 (부강리 475-1번지)	438	16		o	o
부강면3	부강면 태산길 17(맞은편) (부강리 475-3번지)	504	19		o	o
부강면4	부강면 시장길 20 (부강리 478-5번지)	340	9		o	o

연동면1	연동면 내송길 6(부근) (내판리 20-1번지)	-	10	o			o
전의면1	전의면 운주산로 1183(부근) (읍내리 352-4번지)	2,325	65		o		o
금남면1	금남면 용포노티나무길 22(부근) (용포리 146-1번지)	1,467	41		o	o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내부자료(2017년 5월기준) 보완수정

3. 민영주차장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14개소, 총 701면으로 조사됨.

[표 2-3]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현황

구분	주소	주차면	주차형태		징수방법	
			노상	노외	유료	무료
합계	14개소	701		14	10	4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11-11 (어진동 산99번지)	211		o		o
한솔동1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99 (한솔동 967번지)	39		o		o
한솔동2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80 (한솔동 934번지)	46		o		o
한솔동3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25 (한솔동 941)	52		o		o
나성동	나성동 717	92		o	o	
아름동	아름동 1287번지	54		o	o	
원리1	조치원읍 으뜸길 215 (원리 141-54번지)	76		o	o	
교리1	조치원읍 으뜸길 260 (교리 13-3번지)	9		o	o	
교리2	조치원읍 새내15길 2 (교리 11-6번지)	16		o	o	
교리3	조치원읍 조치원7길 32 (교리 21-3번지)	9		o	o	

정리1	조치원을 새내8길 16 (정리 65번지)	14		o	o	
정리2	조치원을 새내8길 18, 16-1 (정리 66-2, 66-5, 66-12번지)	35		o	o	
신안리1	조치원을 섬골골목길 19-6(부근) (신안리 501-6번지)	17		o	o	
남리1	조치원을 새내1길 14 (남리 49-3번지 외 2필지)	31		o	o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내부자료 보완수정

-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착공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8개소, 총 695면이 신규 조성되고 있음.

[표 2-4] 세종특별자치시 민영주차장 착공 현황

구분	주소	주차 면	건축현황(㎡)			주차 형태
			대지 면적	층 수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8개소	695	9,920.1			
고운동1	고운동 1380 (주1-2, 고운동 북측 상업시설 중앙)	43	902.7	6 (2)	720.04 (4,272.2)	노외
고운동2	고운동 1723 (주1-11, 고운동 남측 상업시설 중앙)	38	935.3	6 (2)	747.09 (4,456.26)	노외
아름동	아름동 1309 (주1-27, 아름고 제천 건너편)	99	1,437.1	6 (2)	1,109.03 (6,427.38)	노외
도담동1	도담동 678 (주1-20, 도담동 상업시설 북측)	107	1,586.0	6 (2)	1,174.41 (6,971.53)	노외
도담동2	도담동 668 (주1-21, 도담동 상업시설 남측)	127	1,663.0	6 (2)	1286.88 (7,478.37)	노외
새롬동1	새롬동 (주2-15, 2-2 상업시설 남측)	231	2,122.0	6 (2)	1,690.07 (9,972.41)	노외
새롬동2	새롬동 (주2-14, 2-2 상업시설 북측)	50	1,274	6 (2)	1,005.15 (5,758.7)	노외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내부자료

4. 주차장 확보율 현황

-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 2014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133.4%로 신도시지역 172.3%, 읍면지역 112.1%로 나타남.
- 읍면지역이 신도시지역에 비해 많이 낮음.

[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확보율 현황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대)	주차공급(면)				주차장 확보율 (%)	
		소계	노상	노외	부설		
합계	67,881	90,587	264	819	89,504	133.4	
신도시 지역	소계	24,063	41,462	53	-	41,409	172.3
	한솔동	6,835	9,732	44	-	9,688	142.4
	아름동	11,113	13,018	-	-	13,018	117.1
	도담동	6,115	18,712	9	-	18,703	306.0
읍면 지역	소계	43,818	49,125	211	819	48,095	112.1
	조치원읍	18,823	21,005	201	718	20,086	111.6
	소정면	1,484	513	-	-	513	34.6
	전의면	3,296	4,407	-	50	4,357	133.7
	전동면	2,002	1,116	-	-	1,116	55.7
	연서면	3,898	3,079	-	-	3,079	79.0
	연기면	1,411	4,087	-	-	4,087	289.7
	연동면	1,910	2,152	10	-	2,142	112.7
	부강면	3,459	5,563	-	51	5,512	160.8
	장군면	2,844	3,985	-	-	3,985	140.1
금남면	4,691	3,218	-	-	3,218	68.6	

주 :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 포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제2절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 현황

1. 주차시설 공급현황

1) 공영/민영 주차시설 공급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의 조사 대상지역(신도시지역 및 읍면지역 일부)내 총 주차 공급현황은 15,165면으로서, 그 구성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민영/공영주차장 포함),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됨.
- 노상주차장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의 1.7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의 7.60% 비율을 차지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크게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이중 공영주차장이 6.34%를 차지함.

[표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민영 주차시설 공급현황

구분		주차면수(면)	주차면 비율(%)
총계		15,165	100.00
노상	소계	264	1.74
	공영주차장	264	1.74
	민영주차장	-	-
노외	소계	1,152	7.60
	공영주차장	962	6.34
	민영주차장	190	1.25
부설		13,749	90.66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2) 유료/무료 주차시설 공급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조사 구역 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유료/무료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총 1,416면 중 유료주차장 461면(32.6%), 무료주차장 955면(67.4%)으로 운영 중임.
- 또한, 노상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운영 중이며, 노외주차장은 461면 (32.6%)이 유료로 운영 중임.

[표 2-7] 세종특별자치시 유료/무료 주차시설 공급현황

구분		주차면수(면)	주차면 비율(%)
총계	소계	1,416	100.0
	유료주차장	461	32.6
	무료주차장	955	67.4
노상	소계	264	18.6
	유료주차장	-	-
	무료주차장	264	18.6
노외	소계	1,152	81.4
	유료주차장	461	32.6
	무료주차장	691	48.8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3)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사 구역 내 주차면수는 15,165면으로, 부설 주차면이 13,749면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외주차장 1,152면 7.6%, 노상주차장 264면 1.7%로 조사됨.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주차시설 공급현황

구분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소계		공영		민영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면수	비율
세종시	15,165	100.0	264	1.7	1,152	7.6	962	6.3	190	1.3	13,749	90.7
한솔동	1,946	100.0	44	2.3	200	10.3	200	10.3	0	0.0	1,702	87.4
아름동	859	100.0	0	0.0	160	18.6	160	18.6	0	0.0	699	81.4
도담동	2,792	100.0	9	0.3	0	0.0	0	0.0	0	0.0	2,783	99.7
조치원읍	6,948	100.0	201	2.9	691	9.9	501	7.2	190	2.7	6,056	87.2
소정면	57	100.0	0	0.0	0	0.0	0	0.0	0	0.0	57	100.0
전의면	204	100.0	0	0.0	50	24.5	50	24.5	0	0.0	154	75.5
전동면	25	100.0	0	0.0	0	0.0	0	0.0	0	0.0	25	100.0
연서면	313	100.0	0	0.0	0	0.0	0	0.0	0	0.0	313	100.0
연기면	445	100.0	0	0.0	0	0.0	0	0.0	0	0.0	445	100.0
연동면	29	100.0	10	34.5	0	0.0	0	0.0	0	0.0	19	65.5
부강면	762	100.0	0	0.0	51	6.7	51	6.7	0	0.0	711	93.3
장군면	197	100.0	0	0.0	0	0.0	0	0.0	0	0.0	197	100.0
금남면	588	100.0	0	0.0	0	0.0	0	0.0	0	0.0	588	100.0

주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2. 주차수요현황

- 주간(10:00~17:00), 야간(21:00~02:00)으로 구분.
- 노상주차 수요는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 노외주차 수요는 노외주차장 및 나대지에 주차된 차량, 부설주차 수요는 공동주택(아파트)제외 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임.

1) 동별 주간 주차수요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조사 구역 내 주간 주차수요현황은 15,911대로, 한솔동 1,569대, 아람동 3,494대, 도담동 1,928대, 조치원읍 6,253대로 조사됨.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주간 주차수요현황

구분		노상주차 수요	노외주차 수요	부설주차 수요	합계
읍·면 행정동	리·면 법정동				
세종특별자치시		8,769	1,628	5,514	15,911
한솔동	소계	296	360	913	1,569
	한솔동	191	0	409	600
	나성동	105	360	504	969
아람동	소계	2,699	478	317	3,494
	고운동	1,893	166	-	2,059
	아람동	286	268	191	745
도담동	소계	1,157	14	757	1,928
	도담동	911	4	159	1,074
	어진동	246	10	598	854
조치원읍	소계	3,169	565	2,519	6,253
	원리	108	256	422	786
	상리	270	132	86	488
	평리	98	0	45	143
	교리	712	20	316	1,048
	정리	231	83	224	538
	남리	499	28	462	989
	침산리	393	35	303	731
	신흥리	224	0	88	312
	명리	181	0	60	241
	죽림리	284	3	318	605
	번암리	78	0	83	161
서창리	91	8	112	211	
면지역	소계	1,448	211	1,008	2,667
	소정면	40	-	36	76
	전의면	291	5	119	415
	전동면	26	-	17	43
	연서면	84	16	116	216
	연기면	93	15	120	228
	연동면	25	29	7	61
	부강면	457	49	248	754
	장군면	63	35	84	182
금남면	369	62	261	692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2) 동별 야간 주차수요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조사 구역 내 야간 주차수요현황은 13,746대로, 한솔동 1,190대, 아름동, 415대, 도담동 977대, 조치원읍 8,103대로 조사됨.

[표 2-10] 세종특별자치시 동별 야간 주차수요 현황

구분		노상주차 수요	노외주차 수요	부설주차 수요	합계
읍·면 행정동	리·면 법정동				
세종특별자치시		5,747	714	7,285	13,746
한솔동	소계	220	135	835	1,190
	한솔동	155	0	540	695
	나성동	65	135	295	495
아름동	소계	234	82	99	415
	고운동	94	39	0	133
	아름동	84	20	60	164
	종촌동	56	23	39	118
도담동	소계	434	4	539	977
	도담동	194	4	114	312
	어진동	240	0	425	665
조치원읍	소계	3,379	351	4,373	8,103
	원리	132	105	143	380
	상리	249	71	143	463
	평리	121	0	74	195
	교리	517	24	438	979
	정리	202	27	84	313
	남리	592	37	985	1,614
	침산리	687	68	808	1,563
	신흥리	165	0	234	399
	명리	113	0	94	207
	죽림리	405	9	849	1263
	번암리	86	0	222	308
서창리	110	10	299	419	
면지역	소계	1,480	142	1,439	3,061
	소정면	44	0	22	66
	전의면	350	5	75	430
	전동면	30	0	14	44
	연서면	59	13	157	229
	연기면	73	17	265	355
	연동면	15	5	2	22
	부강면	519	53	375	947
	장군면	26	8	117	151
	금남면	364	41	412	817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3. 주차수급 현황

- 주차 수급률은 주차수급 현황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차공급에 대한 주차현황의 비율로서 계산하는 방법이며,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인 주차장 확보율과는 다른 분석방법임.
- 주간/야간시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전체는 주간 95.31%, 야간 110.32%로 주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역별로 주간 및 야간에 주차수급이 부족한 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 조치원읍은 주간 111.11%, 야간 85.75%로 야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함.
- 읍면지역은 자동차의 대중화 이전부터 조성된 지역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협소한 이면 도로 상태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차량진입이 어려움. 또한 건축된 건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부설주차장 확보 미흡.

[표 2-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현황

구분		공급면수 (a)	주차수요		과부족		주차 수급률	
읍·면 행정동	리·면 법정동		주간 (b)	야간 (c)	주간 (a-b)	야간 (a-c)	주간	야간
세종특별자치시		15,165	15,911	13,746	-746	1,419	95.31	110.32
한솔동	소계	1,946	1,569	1,190	377	756	124.03	163.53
	한솔동	968	600	695	368	273	161.33	139.28
	나성동	978	969	495	9	483	100.93	197.58
아름동	소계	859	3,494	415	-2,635	444	24.59	206.99
	고운동	0	2,059	133	-2,059	-133	-	-
	아름동	578	745	164	-167	414	77.58	352.44
	종촌동	281	690	118	-409	163	40.72	238.14
도담동	소계	2,792	1,928	977	864	1,815	144.81	285.77
	도담동	997	1,074	312	-77	685	92.83	319.55
	어진동	1,795	854	665	941	1,130	210.19	269.92

조치원읍	소계	6,948	6,253	8,103	695	-1,155	111.11	85.75
	원리	751	786	380	-35	371	95.55	197.63
	상리	269	488	463	-219	-194	55.12	58.10
	평리	92	143	195	-51	-103	64.34	47.18
	교리	830	1,048	979	-218	-149	79.20	84.78
	정리	400	538	313	-138	87	74.35	127.80
	남리	1,347	989	1,614	358	-267	136.20	83.46
	침산리	1,083	731	1,563	352	-480	148.15	69.29
	신흥리	293	312	399	-19	-106	93.91	73.43
	명리	134	241	207	-107	-73	55.60	64.73
	죽림리	1,085	605	1,263	480	-178	179.34	85.91
	번암리	278	161	308	117	-30	172.67	90.26
	서창리	386	211	419	175	-33	182.94	92.12
	면지역	소계	2,620	2,667	3,061	-47	-441	98.24
소정면		57	76	66	-19	-9	75.00	86.36
전의면		204	415	430	-211	-226	49.16	47.44
전동면		25	43	44	-18	-19	58.14	56.82
연서면		313	216	229	97	84	144.91	136.68
연기면		445	228	355	217	90	195.18	125.35
연동면		29	61	22	-32	7	47.54	131.82
부강면		762	754	947	8	-185	101.06	80.46
장군면		197	182	151	15	46	108.24	130.46
금남면		588	692	817	-104	-229	84.97	71.97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제3절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현황

1. 조치원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 조치원지역의 공영주차장은 2017년 5월기준으로 28개소(89,794㎡)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면은 968면으로 조사됨.(나눔 주차장 포함)
- 조치원지역에는 빈 사유지를 일정기간 계약 제공받고, 제공한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나눔주차장 정책 시행중임. (사유지이므로 본과제의 해당대상은 아님)
-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3개소(조치원 주차타워(시설관리공단 위탁), 조치원 전통시장(시설관리공단 위탁), 금남대평시장(경쟁 입찰로 개인 위탁))는 유료로 민간 위탁관리중임.
- 기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세종시 교통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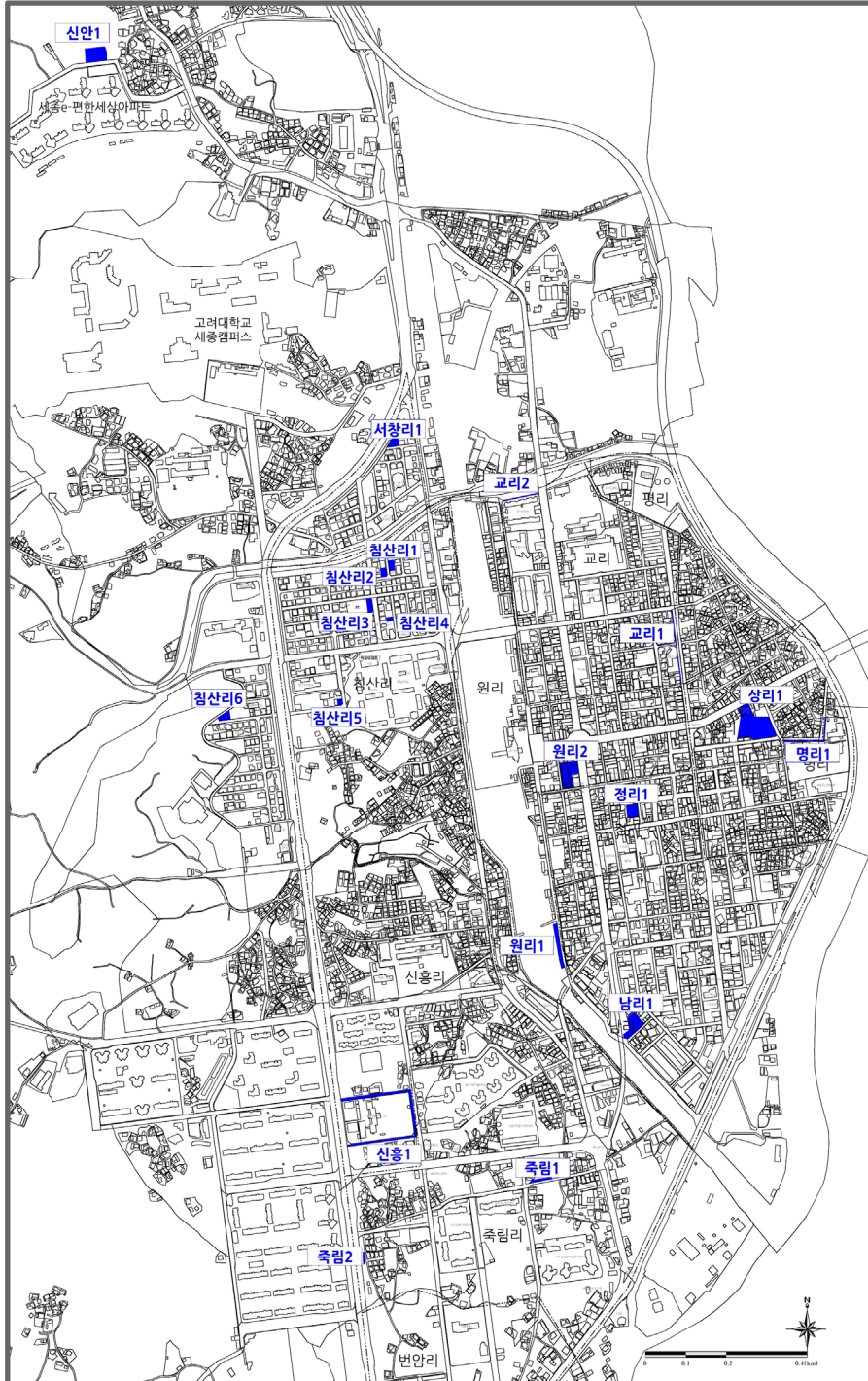
[표 2-12] 조치원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구분	주소	주차면적(㎡)	주차면	주차형태		징수방법		비고
				노상	노외	유료	무료	
합계	28개소	89,794	968	6	22	3	25	
신안리1	조치원을 봉산길(부근) (신안리 541번지)	1,515	49		○		○	
교리1	조치원을 문화로 17(부근) (교리 27-1번지)	25,123	34	○			○	
교리2	조치원을 새내로 165(부근) (교리 140-1번지)	99	21	○			○	
번암리1	조치원을 번암안동네길 20 (번암리 209-14번지)	424	13		○		○	16.12월 (청춘조치원과)
신흥리1	조치원을 군청로 87-16 (신흥리 123번지)	18,332	78	○			○	청사
신흥리2	조치원을 신흥샛터길 37 (신흥리 8-10번지)	212	28		○		○	16.12월 (청춘조치원과)
죽림리1	조치원을 도장말길 52(부근) (죽림리 160-7번지)	301	15	○			○	
죽림리2	조치원을 새동네뒷골길 7-1 (죽림리 359-4번지)	84	9		○		○	

죽림리3	조치원을 죽림본로 9(부근) (죽림리 212-2번지)	793	29		o	o	16.12월
남리1	조치원을 조치원4길 144-15 (남리 433번지)	1,599	45		o	o	
원리1	조치원을 으뜸길 122(맞은편) (원리 154-9번지)	332	36	o		o	
원리2	조치원을 새내로 99 (원리 12-11번지)	2,338	200		o	o	주차타워 (일자리정책과)
원리3	조치원을 으뜸길 215 (원리 141-54번지)	15,007	72		o	o	16.12월 (청춘조치원과)
명리1	조치원을 새내8길 115 (명리 24-1번지)	13,545	17	o		o	
상리1	조치원을 조치원로 54 (상리 96번지)	5,474	90		o	o	
정리1	조치원을 조치원6길 38 (정리 33-3번지)	1,014	71		o	o	주차타워 (일자리정책과)
침산리1	조치원을 행복5길 29(부근) (침산리 254-8-9번지)	359.8	21		o	o	나눔
침산리2	조치원을 행복 5길 29 (침산리 253-5번지)	322.9	10		o	o	나눔
침산리3	조치원을 행복11길 12 (침산리 264-6번지)	430.1	22		o	o	
침산리4	조치원을 행복12길 5-6 (침산리 261-5번지)	200.8	15		o	o	
침산리5	조치원을 행복1길 13(부근) (침산리 272-9번지)	187.5	6		o	o	나눔
침산리6	조치원을 문화7길 13(부근) (침산리 277-13번지)	430.1	10		o	o	
침산리7	조치원을 행복 5길 8-1(부근) (침산리 266-11번지)	270.5	16		o	o	나눔(15년)
침산리8	조치원을 행복 5길 31-3 (침산리 254-3번지)	224.2	12		o	o	나눔(15년)
침산리9	조치원을 행복 5길 18(부근) (침산리 251-13번지)	219.5	12		o	o	나눔(16년)
침산리10	조치원을 행복 12길(부근) (침산리 260-7번지)	180.1	8		o	o	나눔(16년)
침산리11	조치원을 행복 7길(부근) (침산리 270-6번지)	345.3	17		o	o	나눔(16년)
서창리1	조치원을 돌마루5길 27 (서창리 289-2번지)	430.1	12		o	o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내부자료

[그림 2-1] 조치원 공영주차장 위치



2.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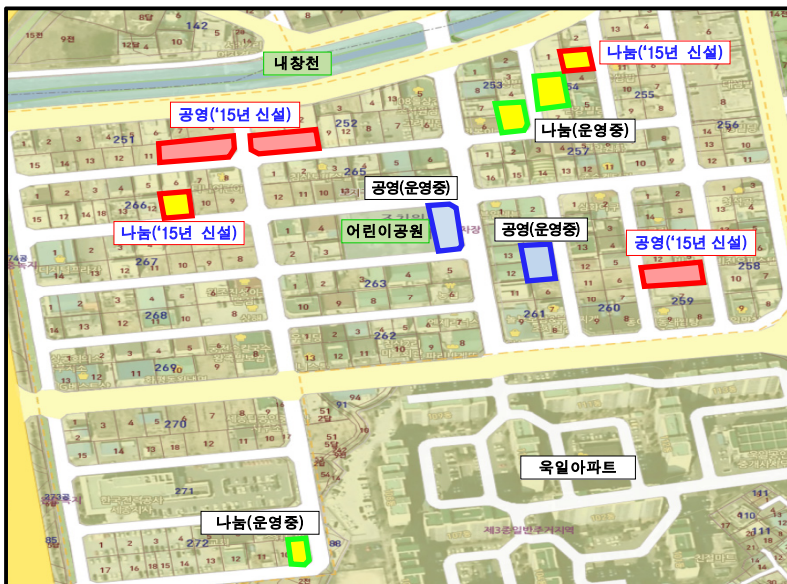
- 조사대상 : 6개소 118면 (침산리, 신흥리, 번암리 조사대상)
- 운영현황 : 무료운영
- 소규모 주차장으로 관제부스, 입출차시설 등 미설치

[표 2-13] 조치원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사대상

구분	위치	주차면수	면적	조성 기간	운영상황
계	6개소	118			
침산리 공영1	침산리 251-9 침산리 251-10	23	538㎡	2015년	무료
침산리 공영2	침산리 252-10 침산리 252-11	21	466㎡	2015년	무료
침산리 공영3	침산리 264-6	19	-	기존	무료
침산리 공영4	침산리 261-4 침산리 251-5	14	-	기존	무료
번암리 공영	번암리 209-14	13	424㎡	2016년	무료
신흥리 공영	신흥리 8-9	28	664㎡	2016년	무료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청춘조치원과 내부자료

[그림 2-2] 조치원 침산리지역 공영주차장 위치도



(1) 침산리 공영1

- 주차면수가 여유로움에도 주변지역에 주차차량 있음.
- 주차장내부 청소상태는 양호하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청소관리상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그림 2-3] 조치원 침산리 공영1주차장 현장



(2) 침산리 공영2

- 주변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은 없으나, 장기주차로 의심되는 차량 주차되어 있음.(현재 조치원읍 조치 중)
-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한 일부 주차면 제초작업이 미흡하나,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

[그림 2-4] 조치원 침산리 공영2주차장 현장



(3) 침산리 공영3

- 내부중심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변 도로상에 불법주차차량 비율이 매우 높음.
- 주변 특정업체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음.

[그림 2-5] 조치원 침산리 공영3주차장 현장



(4) 침산리 공영4

- 주변지역 도로 상에 불법주차차량 다수 있음.
- 주차장에 쓰레기 투기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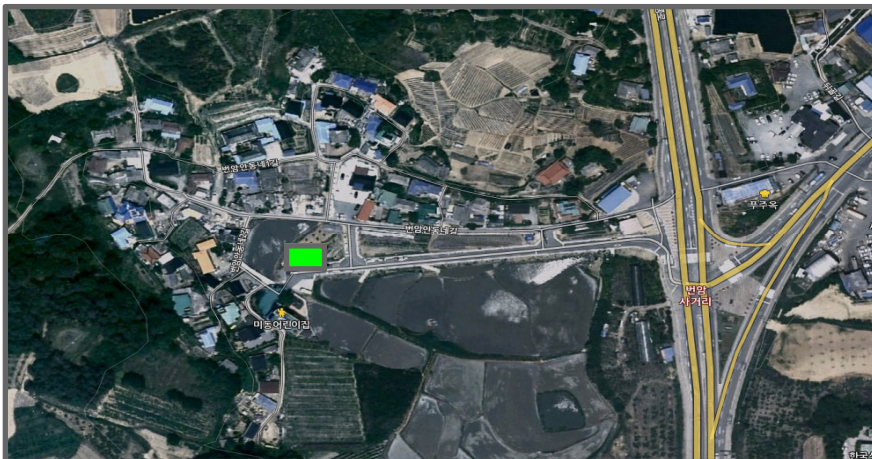
[그림 2-6] 조치원 침산리 공영4주차장 현장



(5) 번암리 공영

- 전반적으로 청소상태 양호.
- 주차장에 여유 주차 면이 있어도 주변도로에 주차차량이 다수 존재.

[그림 2-7] 조치원 번암리 공영주차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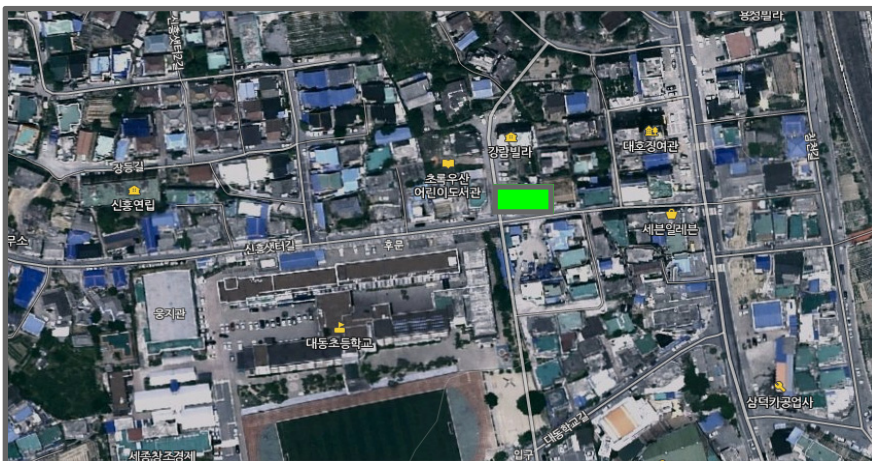
[그림 2-8] 조치원 번암리 공영주차장 현장



(6) 신흥리 공영

- 전반적인 청소상태 양호함.
- 주차장에 여유 주차 면이 있음에도 주변 도로에 주차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좁은 관계로 불법주차 차량이 많을시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그림 2-9] 조치원 신흥리 공영주차장 위치도



[그림 2-10] 조치원 신흥리 공영주차장 현장



- 신흥리 박춘희 이장 및 지역 어르신과 심층 인터뷰 진행 (2017.7.24.)
 - 야간시간엔 주차장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해당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지역주민임 (50여 가구).
 - 청소관리는 신흥리 어르신 등 관계자분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도구비, 쓰레기봉투비, 소액 인건비 등의 지원 필요.
 - 장기주차 차량이 많으며, 차량을 빼도록 권고해도 며칠 뒤 다시 주차하는 행태 보임.
 - 주민협의체 운영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변경 시, 주민 간 갈등요소 발생 우려.

제3장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2.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검토
3. 세종시 주차장 관련 조례 검토

제3장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제1절 관련계획 검토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실현을 위하여, ① 행정중심도시 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차기반 시설 확충, ②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 도시구현을 위한 주차수요관리강화, ③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 고도화를 설정함.
- 본 정책과제와 관련된 부분은 세 번째 목표인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주차운영 효율화임.

주차운영 효율화 (주차이용편의제공 및 주차문화 확립)

- 첨단주차도입시스템
- 관련법 개정
- 불법주정차단속강화/주차문화 캠페인
-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감독강화

- 이 중, 관련이 높은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전담부서 부재 및 공영주차장 관리 소홀로 대부분 운영 효율저하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공영주차장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가. 공영주차장 요금 유료화 및 요금차등화

- 주차요금의 유료화로 장기주차 발생 억제
- 주차요금체계 유료화 및 요금의 차등화(첨두시, 비첨두시 등)로 공영주차장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

나. 주차 금지 세분화

- 주차 금지의 세분화로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
- 금지 조정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 도심의 승용차 통행량 억제를 통한 혼잡비용 최소화

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활성화

- 공영주차장 위탁시 주차 운영효율성 제고로 인한 운영비 절감효과
-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관리 도모

라. 공영주차장 관리의 현대화 추진

-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는 비용부담이 크고, 요금의 적정성 시비 및 부조리 발생 등 관리상의 문제점 내포
- 공영주차장의 민영화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무인기 시스템에 의한 현대화 추진 요구

2) 세종특별자치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2014)

- 국가 ITS 계획과 연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ITS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S 도입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적인 사업추진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여, ITS 사업의 기본 틀을 정립함.

○ 본 정책과제와 관련된 부분은 통합주차정보시스템으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읍면지역이 대상지역임.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ITS 종합계획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분	시스템별 세부 내용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목표(%)	노상/공영주차장 15%, 환승주차장/환승센터 100%	
	목표 산정치표	구축주차장(개소) / 대상주차장(개소)	
	지표 설명	선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공영주차장은 소규모 주차장이 많아 현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며, 2024년까지 구축규모는 전체 노상/공영주차장의 15% 수준임 • 도시부 주차관리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는 100% 도입을 목표로 함
		대상주차장 (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노상/공영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지역 외 노상/공영주차장 28개소 - 신도시지역은 행복청에서 주차장 건설시 주차정보시스템 도입계획 기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지점에서 제외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환승주차장/환승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 7개소 - 세종특별자치시 환승주차장/환승센터는 총 8개소이나, 조치원읍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은 구축계획이 2024년 이후로 본 계획에서 제외함
		구축주차장 (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노상/공영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 - 주차문제가 심각한 조치원읍의 주차장 중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4개소를 선정함 <p style="text-align: center;">(환승주차장/환승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주차장/환승센터 7개소
구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 • 환승주차장/환승센터 7개소 		

2. 주차장법(2017.6.3.)· 주차장법시행령(2016.7.20.)·주차장법 시행규칙(2016.12.30.) 검토

1) 주차장의 정의

- 근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함.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상주차장

■ 설치기준

- 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함.
-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관리기준

- 근거 : 주차장법 제8조
-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

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

-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3) 노외주차장

■ 설치기준

- 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함.
-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하여야 함.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
-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

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 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함.

■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 근거 : 주차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의2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함.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에 따른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관리기준

- 근거 : 주차장법 제13조
-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봄.

■ 관리방법

- 근거 : 주차장법 제15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

-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관련 조례(2016.10.31.) 검토

1) 공영주차장 관리방법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2)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함.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 시장은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시행.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1항 및 3항

○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에 한하여 적용함.

○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함. 단, 시장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주차 1구획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

○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15분으로 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

[표 3-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요금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5분 기준)	1일 주차권	월 주차권
	최초15분 (기본요금)	15분 초과후 매10분 이내			
소형차	500	300	500	5,000	50,000
보통차	700	300	700	8,000	75,000

<페이지 배치로 의도된 공란>

제4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례조사

1. 타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주민협의회체 관리목적 분류
3. 조례개정 사례 조사
4. 주민협의회체 위탁관리 현황

제4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례조사

제1절 타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민협의체, 비영리단체 관련 조례)

- 각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위탁관리에 관련된 조항, 주민협의체나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위탁대상, 해당 대상의 계약방식과 위탁수수료를 정리함.(각 지자체별 조례 내용은 부록 참조)

[표 4-1] 지자체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조례

(관련조례명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주차장 조례로 동일)

지자체	관련조례	위탁대상	계약방식	위탁수수료	비고	
서울특별시	본청	제10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분기별 위탁수수료 교부
	강동구	제9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 또는 낙찰금액	위탁기간 3년, 1번 갱신가능
	관악구	제9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분기별 위탁수수료 교부
	광진구	제7조	지역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금천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노원구	제5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 또는 낙찰금액	분기별 위탁수수료 교부
	동대문구	제4조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 또는 낙찰금액	1년 단위로 재계약
	동작구	제9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1년 단위로 재계약

지자체		관련조례	위탁대상	계약방식	위탁수수료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분기별 위탁수수료 교부
	서대문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징수금액의 30%	분기별 위탁수수료 교부
	성북구	제5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1년 단위로 재계약
	송파구	제8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별도위탁관리계 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50%, 별도수탁금 또는 낙찰금액	
	양천구	제8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위탁기간 1년, 재계약가능
	영등포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용산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은평구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중랑구	제7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이상 또는 낙찰금액	징수요금 정산 후 위탁수수료 납부 가능
대전광역시	중구	제7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1년, 경쟁 입찰 2년
	서구	제7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징수금액의 30%이상	계약기간은 2년까지 가능
대구광역시	서구	제4조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또는 낙찰금액	
인천광역시	중구	제10조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징수금액의 30%~70% 또는 낙찰금액	월별 위탁수수료 교부
	남구	제10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또는 낙찰금액	
	계양구	제10조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의 계약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경기도	광명시	제8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30면 이하로 제한
	김포시	제8조	주민자율조직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의왕시	제6조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위탁기준에 따른 금액 또는 낙찰금액	위탁관리기간 1년, 조정가능

지자체	관련조례	위탁대상	계약방식	위탁수수료	비고	
강원도	고성군	제7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양양군	제7조	마을회 및 어촌계	수의계약	무상	
	원주시	제8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70%이상 또는 낙찰금액	
	태백시	제6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낙찰금액	
	화천군	제7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횡성군	제6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낙찰금액	
충청북도	증평군	제6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경쟁계약	낙찰금액	
	진천군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아산시	제 7조	비영리 민간 자율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경쟁계약	낙찰금액	
	태안군	제6조	마을회 또는 개인	경쟁계약	낙찰금액	
전라북도	김제시	제6조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미기재	미기재	
	순창군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경쟁계약	낙찰금액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비 지원 가능
	완주군	제6조	마을공동체,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수의계약	군수가 정하는 금액	
	장수군	제6조	마을공동체,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수의계약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전주시	제6조	등 주민자생단체 또는 비영리자원 봉사단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낙찰금액	
	정읍시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 등 비영리 봉사단체	미기재	미기재	

지자체	관련조례	위탁대상	계약방식	위탁수수료	비고	
전라남도	광양시	제3조	마을공동대표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신안군	제7조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효율적 관리필요시 70%까지 감면가능, 수익형 관리 어려운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 가능
	함평군	제7조	노인 단체 및 등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경쟁계약	낙찰금액	
경상북도	문경시	제6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수익형 관리 어려운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 가능
	상주시	제6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수익형 관리 어려운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 가능
	울릉군	제6조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계약기간 1년, 2년 내에 연장가능
경상남도	남해군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봉사단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징수금액의 30% 이상 또는 낙찰금액	
	통영시	제5조	비영리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제주도	본청	제3조	읍, 면, 동 주민 자생단체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입찰

제2절 주민협의체 관리목적 분류

1.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해 설정된 주차구획을 지자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위탁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됨.
-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을 주민자치조직으로 확대한 지자체는 아래와 같음.

- | | |
|--------------|--------------|
|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대전광역시 중구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대전광역시 서구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인천광역시 중구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인천광역시 남구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 비영리단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영주차장관리

-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주체를 결정하는데, 공영주차장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입찰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는 경우, 또는 주차비용을 인하하여 공영주차장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경우, 또는 비도심지역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근처의 주민자율조직이나 지자체의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를 맡김.
- 해당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 위탁관리주체에 비해 더 적은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함.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자격을 비영리단체로 확대한 지자체는 아래와 같음.

• 대구광역시 서구	• 전라북도 김제시
• 경기도 광명시	• 전라북도 순창군
• 경기도 김포시	• 전라북도 완주군
• 경기도 의왕시	• 전라북도 장수군
• 강원도 고성군	• 전라북도 전주시
• 강원도 양양군	• 전라북도 정읍시
• 강원도 원주시	• 전라남도 광양시
• 강원도 태백시	• 전라남도 신안군
• 강원도 화천군	• 전라남도 함평군
• 강원도 횡성군	• 경상북도 문경시
• 충청북도 증평군	• 경상북도 상주시
• 충청북도 진천군	• 경상북도 울릉군
• 충청남도 아산시	• 경상남도 남해군
• 충청남도 태안군	• 경상남도 통영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3절 지자체 조례 개정 사례 조사

1. 경상북도 문경시 사례

1) 문경시 시의회 제7대제190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8.)

○ 문경시는 2016년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문경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 상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2] 경상북도 문경시 주차장 조례 개정내용 (2015.12.31)

조례	현행안	개정안
제3조제1항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u>다만,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3조제5항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제6조제1항제2호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제1항제4호	없음	<u>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u>

조례	현행안	개정안
제6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u>다만,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u>
별표1비고제8호	없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로 유료 운영시간을 따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경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문경시주차장조례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음.

2016년도부터 유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무료 운영 및 주차요금 인하, 유료 운영 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수탁자 자격 구체화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대행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문경시 시의회 제7대제190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문경시 교통에너지과 도인환과장)

- 개정된 조례의 제6조제1항제4조에 근거하여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개정된 조례의 제3조제1

항에 근거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경시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2) 문경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조례개정 효과

○ 조례개정 이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3] 문경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구분	주차장 수	주차면수	비 고
계	17개소	1,187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4개소	478면	시청, 시의회, 여성회관, 영강문화센터
노외 공영주차장	9개소	477면	제1공영(모전복개천), 제3공영(벗이랑식당), 제4공영(점촌역 광장), 제7공영(구.시노인회), 제8공영(삼일장), 제11공영(모전공원), 제13공영(구.시대공업사), 제14공영(구.문경관광), 제15공영(점촌역 옆)
노상 공영주차장	4개 노선	232면	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 제6조제1항제4호의 추가로 공영주차장의 비영리단체 위탁 가능, 실제로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3개 지구로 분할하여 2개의 비영리단체에 위탁.(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지회, 문경시니어클럽)

○ 각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4]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	일 주차	월 주차
부설주차장	평일 09~18시 (시청 08~19시)	최초 1시간 500원, 추가 30분당 500원 (민원인 1시간 무료)	6,000원	15,000원
노외주차장			6,000원	56,000원
노상주차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별표1비고제8호를 통해 시청 및 시청인근 주차장에 한하여 08~19시까지

지 유료 운영.

- 제3조제1항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민원인에 한하여 1시간 무료, 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상시근무 직원에 한하여 월 주차 15,000원으로 인하.
- 제6조제2항 개정을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위탁 납부액을 면제하거나 경감 가능.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에 대한 효과는, 아래와 같이 불법무단주차차량 감소,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 향상,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았음.

문경시(시장 고운환)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이 시민들의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금년 초부터 시내 관공서 청사부설주차장 5개소, 노외 10개소, 노상 4개 노선의 일부 구간 등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일반승용차 기준 1시간까지 500원, 추가되는 매 30분마다 500원을 가산하는 요금으로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호소나 이용기피 등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장기주차 차량이 줄어 주차공간이 확보되자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 높아지고 중앙로의 불법 무단주차 차량이 감소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해짐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및 주차질서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1달 동안의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시행 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영단체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조기정착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유료운영 단체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지체장애인을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하여 67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시사문경, 2016.02.15.)

2. 대구광역시 서구 사례

1) 서구의회 제7대제193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2.06.)

- 본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상정되었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내용(2017.03.02.)

조례		현행안	개정안
제4조제1항 (관리수탁자 의 자격)	제1호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제4호	없음	<u>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u>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을 정함	제4조1항제1호와 <u>제4조제1항제4호</u> 의 경우 구청장이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을 정함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음.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 날뫼골이 조성되고 달성공원 서문 개방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달성토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위탁할 경우 주차비용 징수로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7대제193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김준범의원)

-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자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위탁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에 따르면 위탁수수료의 80%를 감면하고 그 금액을 수탁자가 주민들과 공익사업과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위탁 계약함.

2) 조례개정 효과

- 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됨, 동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지역, 명물거리 지역(무침회골목)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위탁(경쟁 입찰시) 주차장비용 징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저조 우려
- 당해 공영주차장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요금할인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구광역시 서구 서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주민자율조직에 공영주차장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이 동의안을 통해 달성토성 공영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행복한 날피골 만들기 사업 주민협의체에 위탁하여 주차요금을 할인 징수함.

제4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주민자율조직, 비영리단체)

-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지자체 중 실제로 주민자율조직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현황(2017.7.24.기준)

분류	지자체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인천광역시 중구	1개소
	인천광역시 남구	1개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경기도 김포시	1개소
	강원도 원주시	5개소
	강원도 태백시*	12개소
	경상북도 문경시**	17개소
	경상북도 상주시	1개소
	경상남도 통영시	3개소
	제주특별자치도	6개소
	대전광역시 서구	1개소
	미운영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왕시		0개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0개소
충청남도 아산시		0개소
전라북도 김제시		0개소
전라북도 전주시		0개소
전라북도 정읍시		0개소

*강원도 태백시 : 월남참전연합회, 전국군경유족회

**경상북도 문경시 : 지체장애인협회, 시니어클럽

-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주민협의체 및 비영리단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시행사례는 그리 많지 않음.
- 주민참여를 통한 위탁관리 시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관련정책개선을 통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페이지 배치로 의도된 공란>

제5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논의

1.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2. 현행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제5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논의

제1절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현행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9조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등)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0.31.)

- 제1항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①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법인, ②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제2항을 통해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제3항을 통해 입찰로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

- ① 주차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시 수입으로 결정한다.
- ② 주차 최대수입 추정액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등으로 한다.
- ④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다음 장에 계속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 ①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 수탁금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 ①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주차표를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 없이 주차장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생된 때
4. 관계법규 및 정당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사항이 발생된 때

제2절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무료공영주차장 관리 미흡

- 제2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일부 무료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 또는 주차장 청소 등, 주차장 관리에 미흡함이 발생함.
- 주차장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없고, 주차장 청소등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관할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등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없어 수익성이 낮은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움.

2. 위탁료 산정기준의 객관성 미흡

- 세종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를 통해 위탁료를 산정함, 산정기준은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뺀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 최대수입 예산액과 관리비는 시행규칙 제10조의 다른 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주차비율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10조의 4항을 통해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와 같이 모호한 기준을 사용함.
- 주차비율을 통해 위탁료가 산정되는 만큼, 객관적인 주차비율 산정규칙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3. 위탁료 산정 주기에 대한 정의 부재

- 위탁료 산정에 필요한 관리비와 주차비율은 시간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탁료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세종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위탁료 산출 주기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함.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단, 세종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

4. 갱신계약의 투명성 미흡

- 세종시의 경우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계약의 갱신에 대한 서술은 없음, 갱신계약 시 적절한 평가절차 없이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 해당업체는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반복될 경우 특혜 발생 소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 계약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이하 생략

- 단, 세종시는 위탁기간 1년마다 갱신 계약시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갱신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됨.(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5.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 부재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통해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검주기와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구체적인 점검주기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 부실화 초래 및 부패가능성이 증가하며,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점검이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간섭으로 오해할 수 있음.
-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에게도 수탁재산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무와 보고주기 및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제3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1.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 읍면지역의 소규모 무료공영주차장이 관리를 위해 향후 유료화사업이 시행된다면 수익성이 낮아 민간위탁참여가 불투명하고, 유료화시 주차비용인하를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주민협의체 등으로 위탁 관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영주차장의 위탁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제9조제1항에,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해당 주차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율조직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
- 위의 제시를 통합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초안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초안

조례	현행안	개정안
제9조제1항제4호	없음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주차장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율조직

2.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주체가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수익금액을 감안하거나 공익목적으로 주차비용을 인하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고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를 토대로 한 시행규칙 개정초안은 아래와 같음.

[표 5-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초안

시행규칙	현행안	개정안
제10조제5항	없음	위탁관리수탁자가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없음	(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없음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결 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세종시 조치원읍, 기타읍면의 구도심지역 주택 및 상가지역 등은 자연발생적인 시가지 형성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근본적인 주차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이면도로의 도로폭 협소 등에 의해 주차난이 심각.
 -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해당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무료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운영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청소관리 불량 및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불편.
 - 주변 불법주차를 야기 시키며 소방도로확보에 어려움을 주어 비상 상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세종시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상은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
 - 향후 읍면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위해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민간위탁 추진시 민간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함.

- 본 연구는 세종시 읍면지역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대상을 주민협의체까지 확대하고,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마련을 제안.
 - 조례에서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해당 주차장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율조직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 시행규칙에서 수익성이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공익목적으로 주차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주민협의체인 경우, 위탁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고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안.

○ 본 정책연구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대상의 조례나 시행규칙의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타 지자체수준이상으로 주민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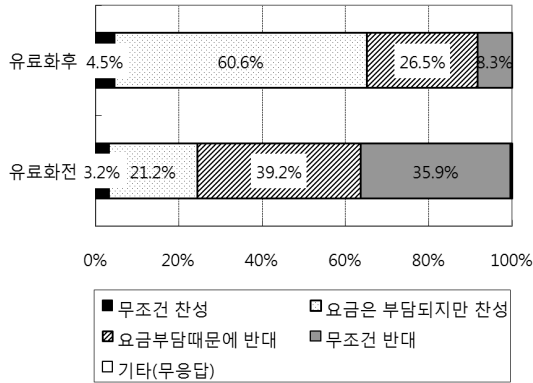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조례상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관리 관련 연구 및 관련 정책발굴이 함께 진행되어야함.

제2절 정책 제언

- 타지자체의 조례개정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대상에 주민협의회 및 비영리단체를 추가한 경우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사업'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시행'을 위해 개정한 사례가 다수였음.
 - 세종시는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잠정적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주민협의회 및 비영리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위탁관리주체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차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하에 유료화가 전제되어야 함.
 - 소규모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및 부가적 교통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료화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함.
 - 유료화과정을 위해서는 주차는 비용을 내야한다는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단계적 유료화사업 연구와 시민의식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그림6-1]의 유료화 전환 과정 시민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유료화전환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요금은 부담되지만 찬성이 높다는 설문결과에서, 현재 세종시는 조례상 공영주차장 요금이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주차 급지세분화 및 차등요금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협의회 및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주차요금을 낮게 징수하는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1]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식 변화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전자의식 및 주차특성 변화 분석, 2009, 황정훈

-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과정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전술한 소규모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제기된 운영관리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조례나 시행규칙에 무료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있음.

예시. (무료공영주차장의 운영)

- ① 무료공영주차장이 시 또는 시에서 설립한 법인에서 관리하기 힘든 경우, 조례 제9조제1항제4호가 무료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이 소재한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율조직’로 정의된 경우,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타 지자체 사례로는 전라북도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실제 시행되고 있는 사례는 없음.
-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등의 의견으로는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한 제비용 지원조항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차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무료공

영주차장에 대한 조항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안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안 예시.

① 대안1: 시에서 용역기관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인원 증원

② 대안2: 신도시(행복도시)지역의 수익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읍면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일부 공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함

- 본 연구에서는 타지자체 관련 조례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었으며, 조례 개정 후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①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사업 계획연구, ②주차금지 세분화 및 차등요금 설정 연구, ③불법주차 단속강화방안 연구, ④유료화전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함.

부 록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민협의체 또는 비영리단체 관련)

1) 서울특별시

-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해 주민자율조직(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가능하게 명시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10.28>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2015.10.2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2015.10.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신설, 2014. 5. 1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05.10, 2001.06.30>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설 2001.06.30>, <개정 2011.05.13, 2013.12.31>
4.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01.06.30>, <개정 2013.12.31.>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01.06.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13.7.25>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3.7.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5.18, 2014.06.26)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4.06.2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05.18, 개정 2007.11.01, 2009.11.05, 2014.06.26)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신설 1999.12.31)

4. 전통시장인근15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신설 2009.11.05, 2011.09.15><개정 2014.05.08>

②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관리 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금지 변경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③관리수탁자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위탁수수료를 위탁관리수수료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한다. 다만, 이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1998.01.13) (개정 1999.12.31, 2014.06.26)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999.12.31)<개정 2014.06.26>

⑤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에 교부한다.(신설 1999.12.31)<개정 2014.06.26>

⑥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05.07)<개정 2014.06.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9조(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고 인정될 때 또는 금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1.3.26, 2007.7.26, 2015.9.24>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01.3.26)

2. 구가 설립한 공기업(개정 2001.3.2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신설 2001.3.26, 개정 2007.7.26>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01.3.26)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1997.8.5, 개정 1999.11.1, 2015.9.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신설 2001.3.26, 개정 2015.9.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10. 16, 2010.3.17., 2016.7.13.)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개정 2001. 10. 16)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10. 16, 2007. 12. 26, 2010.3.17)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99. 10. 11, 개정 2001. 10. 16, 2010.3.17., 2016.7.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99. 10. 11, 개정 2010.3.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2001. 04. 24)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금지변경 등 최초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서울특별시 또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12.12>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

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에게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원증을 휴대토록 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50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없이 관리한다.<개정 2011.12.12>

1.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별도위탁관리계약 체결에 의하여 수탁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금약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용료(위탁수수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0>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20, 2017.2.23.>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3.12.2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④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금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안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5.25, 2005.10.31, 2012.06.21>

1.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6.03.2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05.25, 2007.06.01, 2012.06.21>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신설 2001.05.25, 2016.03.2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1997.04.09, 개정 2000.03.25, 2012.06.21, 2016.03.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6. 9. 29, 2008.3.28, 2012.2.29>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m이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신설 2014.3.21>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시 구청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공영주차장 2개소 이하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30이 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9.26, 2013.3.2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5. 3.21, 2013.3.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9.26, 2005.11.30, 2007. 8. 2, 2013.3.2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신설 2001. 9.26)
 4. 그 주된 사무소가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신설 2013.05.09>
-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3.04.1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신설 2013.04.11>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3.04.11>

③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요금을 정산한 후 납부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 거주자우선주차장 또는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민자율조직(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가능하게 명시함.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8.17, 2012.2.23>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등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상인회, 시장관리자

4.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중구지역으로 유치하거나 이전해 온 기관 및 기업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0.8.17, 2012.2.23>

1. 상인회, 시장관리자

2.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3. 중구로 유치하거나 이전해 온 기관 및 기업

4. 재공고 입찰에 불인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③ 위·수탁 계약기간은 수의계약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의 경우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3.6>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6. 5. 10 조례 제809호>
3. <삭제 2010.04.19 제1028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개정 2009.2.9, 2013.6.17.>

5.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6. 5. 10 조례 제 809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개정 2005.7.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신설 2005.7.5>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위탁자가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7.6.1>
- ③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5.7.5, 개정 2007.6.1>
- ④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05.7.5, 개정 2007.6.1>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신설 2005.7.5, 개정 2006.1.6, 개정 2007.6.1>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0.2.23>)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주차구역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거지전용주차 시행구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항 전문개정 2012.11.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5>
-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관리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관리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03.2.13, 2010.2.23>
- ④ 주차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신설 2003.2.13>
- ⑤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03.2.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동 주민자치위원회

②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준비영리공익법인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주차장 면적에 대한도로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해당 금액 중 높은 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다. 제1항제2호 중나목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라. 제1항제3호의 경우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삭제 1999.12.03)

5)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26, 2009. 11. 9, 2015. 7. 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함)
4. 한국철도공사(다만, 시장이 광명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광명시 지회 또는 지부
6.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8.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

②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4>

1. 수탁자가주차장관련 법규 및 계약내용등을 위반한 때
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의 1/2 이상 운영한 관리수탁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운영 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대행료 및 위탁대행료로 전환된 보증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고 위탁대행료로 전환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환불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4년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9, 2015. 7. 31>

[전문개정 2005. 12. 22]

경기도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1.2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신설 2004.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10.31)
1.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2. 주차장 운영 중 중도 포기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경기도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4.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 이 외의 비영리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고, 시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단체 및 개인
 4.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상인들이 조직한 상인회 또는 상가 번영회(단,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별표 2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급지별 주차장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4.8.>
-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은 주차장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4.10.31>
-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
-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강원도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주민 및 법인·단체
 3. 주차장이 소재한 마을회 및 어촌계
-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 ⑤제1항제3호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주차장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기를 기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 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강원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개정 2012.10.12>)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 3.10, 2009.10. 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09.10. 1, 개정 2012.10.12>
- ② 주차시간 측정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0.3.10, 2009.10.1, 2012.10.12., 2016. 4.15>
-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3. 6. 5>
- ④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 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6. 4.15>

강원도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2.07>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개정 2012.12.28.>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09.12.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6. 3. 18.>
- ③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과 계약사항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1.01.09>

강원도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2. 2012.3.27.>
-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4.12.>
-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7.4.12.> <개정 2012.3.27.>

7)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1. 증평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증평군에 둔 비영리공익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4, 2015. 3. 4>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1. 4, 개정 2015. 10. 3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충청북도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3. 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자본금이 있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
2. 위탁 기간 중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⑥ 관리수탁자는 당해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단정한 복장(제복) 착용

8)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비영리 민간 자율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용주차장의 경우 해당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개정 2016.09.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순위와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5)

충청남도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영주차장 소재지 해당 마을회 또는 군내 거주하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계약 방법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9)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조례939> <일부개정 2016.03.30>

전라북도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③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25, 2010. 12. 30, 2015. 9. 24, 2016. 9. 29>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9. 24>

③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4>

전라북도 장수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04.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신설 2015.04.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라북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치생단체 ·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신설 2001.3.30.> <단서 삭제 2010.4.23.>

4. 해당 재래시장 상인단체(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신설 2005.9.29.> <개정 2009.9.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30., 2009.9.30.>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8.6.13.> <개정 2009.9.30., 2010.4.23., 2012.8.14.>

전라북도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05.24, 2014.12.1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 등 비영리 봉사단체 <신설 2008.01.04>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10.16, 2014.12.19>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양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마을공동대표자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점용료 또는 대부료 등)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 제1항 3호의 관리수탁자의 경우 지역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납부금액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여건상 사실상 수익형 관리가 어려운 공영 주차장은 인근에 운영중인 관광사업자들을 관리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항 납부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며 2년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⑥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⑦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 수반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 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전라남도 합평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경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시, 민간공동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98. 4. 1>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 4. 03., 2015.12.3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13. 4. 03>
 4.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2.31.>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03., 2015.12.31.>
- ③ <삭제 2015.12.31.>
- ④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 4. 3>
- 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 기간동안 제4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주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번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4. 3>

경상북도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7.>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수익형 관리가 어렵고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5.27.>

[전문개정 2012.12.4]

경상북도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5. 1>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1. 5. 1>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개인<개정 2005. 2. 28, 2009. 6. 11>

3.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신설 2009. 6.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09. 6. 11>

③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며 2년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8>

④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5. 2. 28>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주차장 조례 제8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을 갖춘 자<개정 2016. 11. 15>

3.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봉사단체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6. 11. 15>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신설 2016. 11. 15>

경상남도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8.17)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2004.10.7)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개정2004.10.7)
3.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공익법인 (신설2004.10.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관리수탁수수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2004.10.7)
-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2004.10.7)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과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가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또한 선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세종특별자치시, ITS 종합계획 통합주차정보시스템, 2014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통계연보
세종특별자치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기 시정백서
송기욱, 주차장조례를 통해 본 경남 시군 주차장정책 비교연구, 2013
황정훈,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전자의식 및 주차특성 변화 분석, 2009
- 세종시공공데이터(<http://www.data.sejon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http://www.naacc.go.kr>)